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7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12월 19일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9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의 사무이므로,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사무인 같은 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법 제13조제1항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의2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
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, 오염물질을 채취한
시설, 오염물질의 명칭,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)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이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,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, 오염물질의 명칭,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,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, 오염물질의 명칭,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,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, 오염물질의 명칭,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u>